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더 이상 주저앉아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망을 빼달라고 하고, 어떤 아이 엄마는 우리 딸아이와 노는 자기 애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무참히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980년대 살얼음판 같은 제5공화국 시절 소위 '운동권' 사람들에게 자행되었던 무자비한 투옥, 고문의 현장 속에서 한 인간이 이렇게 파괴되었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한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시킨 잔혹한 고문, 고문의 두려움으로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미친 척 한다며 그대로 방치한 살인적인 행위는 이제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대화합을 이루려는 문민정부라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꺼안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몸짓들이 모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극에서 극이 아닌 국민대화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줄입니다.

제13 민사부

판 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대표번호: 02-1234-5678 | 이메일: info@seoulcity.go.kr
Copyright © 2024 Seoul City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

원 고 수 문 국 진 (文 高 國 鎮)은 고려국의 도안을 설치하면서 민고와 속의 학원암을 관할하였다. 1945년 8월, 민고는 주체관 이후 새속 도파성황을 하다가 원교에 대한 10여년간의 고생과 고문을 겪어 속으로 원교의 주교가 경성하던 곳기개에 찾아가 민고의 행방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으로 인하여 원교의 유고문에 고황을 쓸게 되었고, 그들이 원교에 경찰서에 갖다보았다.

**피고 원고 대한민국(大韓民國) 경찰서에 연행되어 간 후 즉 경찰서 대중화 속에서 경찰 출입
증명서를 제작하는 행위로 이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시기를 하는 제3-6서 철고에게 이 대법원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안 우만의 명의에 관하여 주권을 하였는데 원고
가 그 명의를 모른다고 하자 원고의 말을 수차례 배리고 청교가 죄에 징벌을 가부하자 3월 동안
항을 제우며 원고 소송수행자 박찬홍, 김영창**

(3) 원고는 위 차수법으로서 1995.11.3까지는 위 경찰서로 출석해 수사를 받아 냈다가 같은 달 4. 발
변론종결에 1995. 3. 16. 선행되어 그날로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위 경찰서 유치장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11까지는 광장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부모측인 소외 문
주, 김여문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77,887원 및 이에 대하여 1993.10.28부터 1995.5.4.까지
간 풍설품 내어놓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더 손리를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9,071,5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무과에 유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5 내지 8, 11, 14, 16 내지 19, 21 내지 24, 27 내지 34, 37, 39, 을제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기영, 김여옥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는 1986.3.25. 원고가 소외 고성국 외 7인과 함께 1985.경 다산기획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불온서적 및 불온 유인물을 제작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등을 의식화시켜 각 지역운동세력을 연합하여 연합전선을 결성, 민중봉기에 의한 폭력혁명을 유발하여 독재정권과 제국주의를 타도, 민족민주혁명을 완수한 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획책하여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에 동조, 적을 이롭게 하는 등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여 위 다산기획 관련자 중 위 고성국의 6인을 검거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백원담을 검거하지 못하여 그들을 수배조치하였는데, 원고는 수배된 이후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가 원고에 대한 검거책임을 맡은 경찰관들이 수시로 원고의 부모가 경영하던 옷가게에 찾아가 원고의 행방을 추궁하고 위 옷가게 앞을 지키고 있어 손님이 감소하는 등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모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0.27.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자수하여 위 경찰서에 연행되어 간 후 위 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장 소외 김낙현등은 원고를 상대로 위 다산기획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다산기획사건의 관련자로서 당시 검거되지 않고 있던 위 백원담의 행방에 관하여 추궁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행방을 모른다고 하자 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원고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자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였다.

(3) 원고는 위 자수일로부터 1986.11.3까지는 위 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다가 같은 달 4.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집행되어 그날로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위 경찰서 유치장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11까지는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부모들인 소외 문재호, 김여옥이 위 자수일로부터 3일후인 같은 해 10.30. 위 경찰서로 원고를 면회가서 사가지고 간 통닭을 내어놓자 원고는 원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하려 하느냐”하면서 몸을 비비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등 발작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위 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하루 1, 2회 정도 몸을 심하게 떨며 수용되어 있던 소외 장이환이 원고에게 말을 걸면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답변을 하고 보호실벽을 넘으려 하는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인 같은 해 12.5. 위 문재호, 김여옥이 원고를 면회하러 갔을 때 몹시 홍분된 상태로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였으며, 담당검사로부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고 귀소한 후 19:00경 거실창가에 서서 갑자기 “재판장 이 세끼야 나오너라”하며 소리를 치는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취침시간 이후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서성거리며 시간마다 몇시냐고 묻는등 횡설수설하고, 같은 달 6. 9:20경 거실창문을 부수고 변소에서 오물을 펴내어 복도에 던지다가 위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정제 주사를 맞고서야 진정이 되었으며, 같은 달 7. 거실내에서 서성거리며 계속 구치소 근무자를 불러 전후가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12:00경에는 식사를 하다가 밥을 창문 밖으로 던지면서 “○○○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3회 제창하였으며 16:00경에는 답답하다고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3회 차는 등의 행동을 하고, 같은 달 8. 11:30경 밥을 창밖으로 던지며 “먹을 사람 먹어라”라고 소리치고 12:30경 거실문을 발로 차서 자물쇠뭉치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후에도 간헐적으로 문을 차며 배식된 음식을 집어던지고 자다가 자주 일어나 횡설수설 중얼거리며 방안에서 서성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자신이 배설한 변을 먹기도 하였으며 밤마다 튼 소리로 민주방송이라는 것을 하였다.

(4)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발작 및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자 동산병원 및 경희의료원에 데리고 갔던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후 원고가 계속하여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치료 기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일부러 미친 척한다고 하면서 원고를 유치장 독방에 수용하였으며, 원고가 검찰 송치 이후 위 구치소 담당공무원들은 위 구치소 의무과장 소외 이기린으로 하여금 1986.12.6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원고를 진찰하도록 하여 위 이기린이 원고에게 진정제 주사를 놓아주고 같은 달 8. 최상섭 신경정신과 원장인 소외 최상섭으로 하여금 원고를 진찰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최상섭이 원고의 증세를 구금상태에서 볼 수 있는 구금성장으로 판단하여 추후 진찰 및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진단하고 위 문제호, 김여옥이 계속하여 원고의 치료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상증세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고 포승에 묶어 놓았으며 약 4일간은 원고를 징벌방에 수용하기도 하였다.

(5) 그후 검사의 감정유치청구에 따라 원고는 1986.12.12.부터 1987.2.28.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같은 달 27. 위 병원 의사 소외 최용성은 원고의 증세를 정신분열병양(樣)장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해 3.4.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6) 원고는 그후 병세가 호전되어 출판사에 취직을 하고 1988.9.10. 소외 윤연옥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29.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1990.2.28. 딸을 출산하기도 하였으나 1993.6.경에 이르러 쉽게 홍분하며 화를 내고 딸을 때려죽이겠다고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기타 편집증적 사고, 이자극성, 과대망상, 피해망상, 수면장애,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장애, 통합적 사고력 감소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6.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경 퇴원하였으나 퇴원후에도 계속 위와 같은 이상증세를 보여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1960.3.16. 생으로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3.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였다가 3학년 2학기에 학교를 중퇴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산기획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등 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위 경찰서에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계에도 그러한 질병을 앓은 사람이 없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정신분열증은, 위 다산기획사건으로 수배되어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계에도 정신질환을 앓은 자가 없었는데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3일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일이 있고 난 후 비로소 발병된 것이라 할 것인데 나아가 그의 이같은 증상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계속 발작 및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사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징벌방에 가두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수사관계자등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87.2.28.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加害者를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93.10.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된 후 출판사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여 딸까지 낳는 등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다가 1993.6.에 이르러 갑자기 발작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 할 당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6년여가 경과하여 다시 위 같은 증세가 나타날 것을 예전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발작증세가 새로이 나타난 1993.6. 비로소 위 새로이 발생한 증상에 따른 손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해 10.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당시인 1986.12.11.의 현가로 계산한 금 36,716,38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내용

(가) 성별: 남자

(나) 주거생활권: 도시지역인 서울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월 25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 상당

(1993. 현재 월 금 530,000원($21,200 \times 25$), 1994. 현재 월 금 557,500원($22,300 \times 25$), 1995. 현재 월 금 680,450원($27,218 \times 25$), 원고는 30 내지 34세 사이의 남자 대졸자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대학을 졸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시인 1993.10.14.부터 60세가 되는 2020.3.16.까지(경험칙)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1) 후유장애: 정신분열증 (重性精神分裂症, 경증정신분열증으로, 기여도 20%로, 경증정신분열증으로, 기여도 5% 정도)

가동능력 상실비율: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20%, 재발기(1년에 2월)에는 100%

(2) 경증급액: 중 100%로 한다.

[증거]

갑제3호증, 갑제4, 8 내지 10호증의 각 1, 2,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원미만,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고, 중간의 월미만은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삽입한다)

(가) 기간 이 사건 소장부분 중 날짜를 기록한 1993.10.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1) 1993.10.14.부터 1994.1.13까지: 3개월 그 다음날부터 완체일까지는 소송촉탁등에 관한 특례법

2) 그 다음날부터 1995.1.13.까지: 12개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3)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20.3.13.까지: 302개월 대하여도 환자재벌에 손상 미흡에 따른

(나) 현가의 소송을 관리하는 의사들이 그 치료방법과 손상에 대하여 합의하여 상당하다고

1) $530,000\text{원} \times (1 \times 2/12 + 0.2 \times 10/12) \times (73.3702 - 71.1548) = 391,387$ (증거로 한다), 원고에 이 사건

2) $557,500 \times (1 \times 2/12 + 0.2 \times 10/12) \times (82.0328 - 73.3702) = 1,609,799$ (증거로 한다), 원고에 이 사건

3) $680,450 \times (1 \times 2/12 + 0.2 \times 10/12) \times (235.0868 - 82.0328) = 34,715,198$

4) 합계 금 36,716,384원

185-4

나.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치료내용: 향후 혼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정신분열증의 만성화과정을 봤을 것으로 예상되는 테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외래에서의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재발기(1년에 2월)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함.

(나) 치료기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1995.3.17.부터 원고의 여명기간인 2030.7.11.까지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다) 치료비: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월 금 376,854원($9,044,500 \div 24$), 재발기(1년에 2월)에는 월 금 1,000,000원이 소요되어 매월 금 480,711원($376,854 \times 10 + 1,000,000 \times 2 \div 12$)의 치료비가 소요됨.

[증거]

위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기간

1995.3.17.부터 2030.6.16.까지: 423개월

(나) 현가(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480,711 \times (277.2461 - 83.4467) = 93,161,503 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이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장애발생의 경위,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금 10,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77,887원(일실수입 금 36,716,384원+향후치료비 금 93,161,503×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0.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5.5.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탁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에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5.4.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박은영

판사 최혜리

17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를 제안하며

경과보고

대책위원회 제안서

준비위원회의 구성

*문국진은 1960년 3월 16일생이다. 끄끅지 못한 가정이지만 부모님들은 욕심없고 근면하게 살고 있다(현재 아버님 69세, 어머님 61세). 형제로는 4살 위인 형이 하나 있다. 문국진은 어릴 때부터 가족 및 친척들과 서대문에 있는 충정교회를 다녔으며 학생회장을 하는 등 소년기를 평탄하게 보냈음. 철학과는 본인의 뜻에 따라 지원한 것이며,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민중교회(동대문에 있는 청암교회)를 간간히 나갔음.

*1973년 서울 미동국민학교 졸업

1976년 서울 중앙중학교 졸업

1979년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9년 연세대학교 철학과 입학

1988년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1983~85년 도서출판 화다 편집장

1986년 3월 25일 보임·다산 사건으로 전국 지명 수배

병명: 정신분열증, 피해망상, 인간관계 망상, 편집증

1980. 10월경: 반공법으로 서대문서 구속, 1년 형 2년 집행유예 선고받고 3개월 만에 나옴

1986.3.25: 다산, 보임사건 이후 수배

1986.10말경: 청량리경찰서 자수 구속, 정신질환 발병

1986.12.12~1987.2.28: 정신분열증으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입원(관비)

1987.8.29~87.9.20: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재입원

1987.9.21~12.8: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낮병동 다님

1988.9.10: 결혼

반제반파쇼운동론 저술(온누리 다니면서)

1989.10.30~11.27: 동서문화사 3개월 다니던 중 재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재입원.

혁명이론의 빈곤 저술

1990.2.28: 딸 출산.

1990.10~1991.3: 고려대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입원(한울 6개월 다니던 중 재발)

시가 있는 아포리즘 출간 준비했으나 책으로 나오지 못함

1993.6.26: 고려대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입원

1991° 12° 1° 금여군

〈기도〉

주교

오늘날의 전례를 저질렀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냈던 것이 그것입니다.

『술』이 잘 안 써지니 그것이 원통합니다.

면료한 정신 속에 깃든 투명한 의식과 투명한 행위가 그립습니다.

절대적 자아의 실존을 깨닫고 그대로 행위하고 싶습니다.

노력 - 꾸준한 자아의 노력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 정신을 확장합니다.

헤겔과 수학을 총체적으로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편한 마음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 대신 아침에는 일찍 땀이 하여야 합니다.

편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한 마음 크게 먹는 거지요.

주교이 정교로 전강을 회복시켜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예과 예기와 힘을 제게 허락해주세요.

4. 문국진의 아내가 드리는 글

남편과 결혼한 지 어언 6년째, 얼마전 남편이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정신질환을 얻게 된 당시를 상기하며 이 글을 써내려 가자니 복받쳐 오르는 울분과 격앙된 감정을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미 병들어 있던 1987년, 처음에는 그와의 결혼문제를 두고 울기도 많이 울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안고 사느니 함께 부딪히고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생각한대로 결혼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 한 때는 저희도 서로에게 애틋하고 작은 평화로움을 느끼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투병중에도 운동의 의지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필하는 생활을 했으며, 성수동에 있는 야학을 다니며 보람을 느꼈고, 저는 앞날에 대해 희망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해보고 싶다며,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직원 100여명 정도로 이루어진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잦은 야간작업 등 열악한 작업 조건때문에 사내에서 노조 결성문제가 거론되자 남편은 신경이 무척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에서 나에 대한 압력을 회사에 넣고 있는 것 같다.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나에 대해 보고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고, 이를밤을 못자고 나더니 점점 난폭해져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생되리라고 생각했던 결혼생활이었기에 어찌보면 담담했습니다.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으로 가는 천철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만이 쏟아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은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재발되어 입원할 때마다 회복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증세도 심해져, 입원 직전마다 더욱 난폭해졌으며 광란의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저의 담담했던 심경은 생활고와 거듭되는 남편의 입원으로 점차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1990년 딸아이가 생후 7개월 되던 해 남편은 또 다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중곡동 국립병원에 병실이 나려면 1주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어린 딸아이까지 보살펴야 했던 저는 점점 난폭해지는 남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발병할 때마다 그랬듯이, 고문 당하던 시점으로 정신이 돌아가, “내 행동을 안기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안기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느냐. 도청이 돼 있을테니 전화는 밖에서 하라”는 등 극히 불안해하다

가 급기야 저까지 의심하는 상태에 이르러, 자려고 누워 있는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어린 딸을 안고 초겨울에 내복바람으로 뛰쳐나왔고, 다음날 동네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입원시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면회갈 수도 없었고, 우리 세 식구가 살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그해 남편은 무척 긴 입원을 해야만 했고 회복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때 연대 동문·동기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하고 1년동안 생활비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생활 자체를 감당하기도 힘들어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대 동기이신 꽁진선씨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위로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어린 딸아이를 맡기고, 저는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저의 어려운 처지를 아는 직장 동료들의 위로가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기에도 지친 삶이지만, 그러나 저는 다시 몸을 추스리고 살아나갈 것입니다. 지난 6월 13일 경희대에서 열린 '민주열사추모제'를 보고 나서 남편은 "죽느니만 못하게 살고 있는 내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달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밤새워 통곡했습니다.

남편의 고통은 이미 저의 고통이 되었고, 남편의 한맺힌 삶은 이미 저의 한맺힌 삶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청춘을 이렇게 파괴시켜버린 1980년대 국보위·안기부·치안본부, 그 무서운 고문의 현장과 은폐된 살인행위들! 얼마나 많은 꽃다운 젊음들이 죽고 병들어 갔는가!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 최동

저는 남편의 문제가 진상 규명되어,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이 문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1. 목 적

- 1) 문국진의 건강한 사회생활의 영위를 위한 제반 활동을 모색한다.
- 2) 법정투쟁에 필요한 여러가지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한다.
- 3) 고문의 반인간적 직태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활동을 한다.

2. 명 칭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
고문피해자 문국진 대책위원회
문국진 고문 대책위원회

3. 구성범위

- 1) 직, 간접적으로 문국진과 친분이 있는 사람 및 모임.
 - 가족, 79학번, 연세민주동문회, 인간연구회
 다산보임 관련자
 교회(청암교회 최의팔 목사)
- 2) 인권단체
 - KNCC, 민가협, 유가협, 카톨릭
- 3) 개인
 - 고문, 자문위원 혹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연세대학교 교수, 문국진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교수 및 저명인사
 운동권 명망가
- 4) 정치인
 - 국회의원

4. 주요 활동내용

- 1) 활동을 위한 기금 모금
 - 각 소모임별(79학번, 다산보임, 인간연구회 등)로 책임자를 정하여 적극적인 활동으로 모금사업을 벌인다.
 - 언론 및 각 운동단체의 기관지를 통한 대중 모금사업
 - 자금 마련을 위한 기타사업(예, 하루찻집)
- 2) 법정투쟁에 필요한 여러가지 증거확보
 - 80년 고문시 관련자들을 최대한 알아낸다(79학번, 인간연구회 등)
 - 다산보임 사건시의 고문을 입증할 여러 자료와 증언
 - 기타 정황을 증거할 수 있는 각종 언론자료
- 3) 문국진 고문사례를 중심으로 고문문제를 사회문제화
 - 고문 고발센터를 설치하여 고문사례를 모은다
 - 이것을 기초로 고문백서를 발간한다

- 기타 고문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러가지 홍보사업을 마련한다

4) 기 타

5. 체 계

* 위원장 -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누구를

* 운영위원회(모금, 증거확보 등의 일에 적극 나서고 이번일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소모임의 대표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 혹은 사무국

집행위원장 혹은 사무국장 - 모든 실무를 총괄한다.

총 무 - 재정을 담당한다

홍 보 - 고문사례 정리 및 백서준비

언론사에 대한 홍보

연 대 - 국내, 국제 인권단체에 대한 홍보와 연대를 모색한다.

* 개 인 - 고문, 후원 혹은 대책위원

6. 일정

1) 먼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 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과

- 기본적인 홍보, 선전, 모금사업을 벌인다.

2) 범민족대회가 끝난뒤 정식으로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3) 대책위원회 발족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한다.

7.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할 일

1) 구 성

준비위원장

실무책임자

준비위원(총무, 홍보, 연대 및 개인)

2) 할 일

* 기본 선전자료를 작성하여 1) 각언론사 2) 운동단체 2) 사회단체에 보낸다.

* 대책위에 포함될 사람들을 만나, 인원을 확정한다.

* 모금작업을 시작한다.

8. 토의사항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1-7-95	자료번호

문국진 - 윤연옥씨 부부

군사정권에 껴인 내 삶을 돌려주오



군사정권의 악행은 어디까지였나. 과거청산의 시대적 과제가 표류하는 속에서 여기 폭압에 짓밟힌 한 사람의 재활을 위한 몸부림이 있다.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가. 그의 재기는 그만의 뿐인가.

노민영(『일터』 편집차장)

정신병동의 맑은 눈망울

고대 구로병원 10층의 정신병동에 지금 맑은 눈망울의 한 남자가 갇혀 있다. 이목구비 깨끗하고 세상을 향한 그의 눈길은 따뜻하다. 그가 아내에게 속삭이듯 확인한다. “뒤따라 온 사람 없지? 집에 안 기부원 안 찾아왔어? 방심하면 안 돼.”

문국진씨. 서른 네 살의 그는 아내와 네 살밖에 딸 해인이를 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이곳, 정신병동에 혼자 입원해 있다.

제쳐묻는 절박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망울을 들여다보는 그의 아내 윤연옥씨(33)는 가슴속에 눈물을 삼키고 그를 등지고 병원 문을 나서면 눈물이 앞을 가려 벽을 기대잡는다.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결혼 전은 물론 결혼 후에도 병세가 나빠진 몇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그가 남을 혐담하거나 쓸데없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해인이 아빠가 병세를 주체못하고 고통당하는 걸 볼 때마다 억울하고 분한 생각뿐입니다.”

문국진씨는 이번 입원까지 해서 도합 여섯 번째 정신병동에 입원했

다. 그가 처음으로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 86년 10월. 5공 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때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증 자수하여 들어갔던 청량리경찰서에서였다.

당시 그는 검·경찰이 ‘보임·다산 사건’으로 이름붙인 한 조직사건의 핵심활동가로 지목되어 수배증이었다. 몸을 숨겼던 자취방이 수색당하고 부모가 운영하던 웃가게가 매일같이 10여명의 경찰들에게 점령당하던 때에 부모의 인도로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했던 그는 구속된 뒤 3일 후 국도의 긴장상태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다. “사람이 이상하니 와서 보라”는 청량리경찰서 측의 연락을 받

고 달려간 그의 부모는 사가지고 간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같이 고문하려고 사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아들을 보고 질겁하고 말았다.

문국진씨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 상태에서도 계속 조사받았다. 수배자 검거와 특진에 끌물해 ‘그까짓 치료’가 문제일 수 없었던 형사들로부터 “수배된 동료들의 연고지를 대라”는 추궁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발가벗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심상치 않은 증세를 보였으나 그럴 때마다 경찰, 전경들로부터 “이 새끼 미친 척 한다”며 뜬금을 맞았다.

그러고 나서 1개월여 만에 성동구 치소 입감. 다시 독방에서 꽁꽁 묶인 채 생활했다. 어머니 김연옥씨(61)는 “그때 곧바로 치료를 받기만 했어도 이토록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슴을 친다. 당시 그의 부모는 에타계 검사와 변호사에게 매달렸으나 번번히 ‘알았다’는 말뿐이었고 담당형사에게서 “재수가 없다. 건대 일(86년 10월 말 경찰진압에 맞선 학생들의 건국대 농성사건을 말함)이 터져 미뤄지고 있다. 기다려라”는 기가막힌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성동구치소 이감 전에 경찰들과 함께 중곡동 정신병원에 보이려 간 적도 있어요. 그때 국진이는 누가 보아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몸부림치고 소리소리지르고…… 그 런데도 담당의사는 보고 ‘괜찮다’고 했다나봐요. 아마 경찰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거나 수사에 필요했던가 봐요. 결국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성동구치소에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긴 것은 그가 최초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뒤 한 달 반이나 지난 그 해 12월 12 일이었다.

정신질환 상태로 한 달 반동안 방치

86년 구속 후 보인 그의 첫 정신질환의 연원을 따지자면 멀리 80년 10월 신군부의 국보위 시절로 이어진다. 당시 연세대 철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그는 새벽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게 잠결에 끌려 나갔다. 광주항쟁 이후 휴교 상태였던 삼엄한 정국에서 학생운동을 계속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터무니 없는 징역살이였으나 그것이 ‘법’(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시절이었다.

출감 이후에도 그는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동료들에 의하면 눈에 띠는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학생운동 동료였던 곽진선씨(34)는 “워낙 진지하고 말수가 적었던 국진이가 징역을 살고 나온 후부터는 유독 슬자리를 못 견뎌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술을 조금만 마셔도 황설수설하고 몸을 못 가눴다. 옆 자리 친구들을 꼬집고 때리는 일도 자주 있어 동료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중언한다. 어머니 김씨는 “날 궂은 날이면 무릎이 저리고 온 몸이 무진다고 힘들어 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출감 이후 쓰여진 그의 일기 곳곳에는 “프락치가 되느니 운동을 그만 두겠다”는 고백적인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 당시 구속되어 당한 일들을 짐작하게 한다. 그의 첫 출감이후 야학활동을 함께 했던 김명교씨(33)는 “문국진씨가 자주 ‘저 놈들



문국진씨와 부인 윤연옥씨, 그리고 이들의 외딸 해인.

한테 끌려가 무슨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운동가다'는 말을 자기최면을 걸 듯 말하곤 했다"고 증언했다.

일상적으로 연행, 수사, 구속의 위험에 직면해 있던 사회운동의 긴장 속에서 5공 정권 내내 야학활동, 사회과학 출판사 편집장 등으로 일 하던 그는 마침내 5공 말기 공안조직 사건의 피의자로 쓰기게 되었고 조여오는 검거망에 밀려 자수했다가 며칠 만에 정신질환자자 되고만 것이다.

이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연희신경 정신과의원 김병후 원장은 "특히 피해자가 공포상황 이전에 이상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지극히 양심적이고 순수할수록 심리적 공포로 인한 정신병리의 발병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진단한다.

순결한 양심일수록 발병가능성 높아

문국진씨의 병치례로 부모님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 특히 그의 아내 윤연옥씨의 고통은 더욱 그렇다.

"해인이 아빠는 저의 사회생활 초기 삶의 좌표를 정하던 시절에 선배 이자 학습, 소모임 지도를 담당해주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이는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치밀함에다가 날카로운 분석능력을 갖고 있어서 동료들 사이에 신망이 높았지요. 같이 쓰기는 신세였다가 그의 발병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 인상 속의 그분은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듬해 그러니까 87년에 그분이 출감한 후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을 때 다시 만났는데 상태는 나빴지만 전 그분이 영영 이기지 못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문국진씨의 담당의사 최용성씨로부터 "문국진씨가 윤양을 자주 찾던데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다. 여러모로 문국진씨에게 위로가 되어 치료에 많은 힘이 되겠다"

는 소리를 듣고 병수발을 듭게 되었고 문국진씨도 점차 회복돼 갔다. "결혼문제가 닥치고는 솔직히 두려웠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등돌리고 돌아서서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느니 그분을 믿고 이겨보자'는 생각에 결심했지요. 이듬해 88년 9월 10일에 결혼했고 신혼여행으로 함께 꼭 한 번은 가고 싶었던 망월동 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걱정 때문에 신혼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가 병세를 이기려고 투병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더 큰 행복도 있었습니다."

윤씨는 지금도 망월동 어느 무명 전사자의 무덤앞에 술을 따르고 소리죽여 부르던 「오월의 노래」 한 구절과 그의 눈물 젖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던 89년 가을, 문국진씨는 아내가 임신 7개월로 무거운 몸이던 때에 이를 동안 불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기어이 병세가 재발하고 말았다.

"홍분하지 않게 조심하고 정기적인 휴양이나 휴식이 필요한데 투약에만 의존하고 생계 때문에 직장(동서문화사)에 나가야했던 게 원인이었겠지요. 그이는 병세가 악화되면 꼭 안기부, 경찰, 전화도청 같은 문제로 극도의 피해의식을 보이다가 쓰러집니다. 어떨 때는 나를 안기부 요원이라고 홍분하기도 했고요……."

그 후 그는 매해 발병했고 그럴 때마다 조심스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듯 가정의 평화는 헤집어지고 윤연옥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인이에게 아빠의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린 딸애를 감

싸안고 집을 뛰쳐나가야만 했다.

"지금도 조금 진정이 되면 면회간 제게 남편은 '애 쟁기랴, 돈벌랴, 몸이 피곤해서 어찌느냐'며 펻한 눈으로 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잠자는 애를 끌어안고 남편 몰래 운 적도 많습니다. 안락한 삶을 바라지도 않고 평화로운 남의 가정을 부러워도 안합니다. 우리 해인이 아빠, 충분히 쉬면서 맑은 정신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부드러운 속내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바랍니다."

문국진씨의 뒷, 우리의 뒷

문국진씨는 병치례를 하고 있던 88년 이후에도 『반제반파쇼운동론』(88년, 온누리 간), 『혁명이론의 빈곤』(90년, 신평론 간) 등의 책을 저술한 바 있으며 이번 발병으로 여섯 번째 입원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집

요한 재활능력을 보여주어 친료를 담당해온 의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병은 악화돼 왔고 재발되어 입원할 때마다 회복기간은 점점 길어져 병치례를 감당해온 윤연옥씨를 점점 더 절망에 빠트려놓았다. 지난번 발병 때는 어린 해인이를 껴안고 다시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윤연옥씨에게 남편의 문제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생겼다. 이번 발병 직전인 지난 6월 13일 경희대에서 인권단체들이 연 '민주열사추모제'를 함께 보고 오던 날, 문국진씨는 "죽느니만 못하게 살고 있는 내 가슴속의 용어리를 풀어달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밤새

워 통곡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보며 윤연옥씨는 "남편의 문제가 결코 개인적인 발병이 아닌 만큼 오로지 둘이서 감싸고 견디려다가 지쳐 쓰러져서는 안되겠다"는 서슬푸른 다짐을 새기게 되었다고 한다.

"솔직히 남편의 병세를 혼자 치유 시킬 자신은 없습니다. 결국은 한 인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방을 빼달라는 주인, 자기 아이를 우리 해인이와 놀지 못하게 하는 이웃들의 야박함을 탓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무자비한 투옥, 고문이 한 인간을 이토록 파괴했음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의 이런 다짐 속에는 두려움도 있다. 남편이 어쩌면 감추고 싶어할지도 모를 정신병력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남편에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이 점에서는 그는 남편의 '냉철한 판단'을 다시 믿고 싶다.

그는 최근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80년에 문씨를 밀고했던 이, 서대문경찰서에서 그를 고문했던 이, 청량리경찰서 취조담당자, 그리고 성동구치소 보안과 책임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들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한 그들이 '나는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진심이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 가족의 사정이 『한겨레신문』(7. 20자)에 보도된 후 윤씨는 수많은 격려 전화에 감동받고 있다 고 한다.

한편 문국진씨의 재차 발병 소식

과 그 아내의 결심을 들은 문국진씨의 서클 동기, 대학 동문들, 그리고 그와 인연이 있었던 많은 이들(용산고 동문들, 청암교회 교우들, '보임·다산 사건' 관련자들 등)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로 구성된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사무실 : 연세대 민주동문회)는 문국진씨를 위한 정신적 물질적 원조는 물론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도 준비중이라고 한다.

이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박래군씨(33,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는 "이번 일을 계기로 5·6공 군사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인권파괴 행위와 피해자의 고통으로 남겨진 여러 사례들을 발굴, 정리하고 함께 대책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막 활동에 나선 '문국진씨 대책위' 관계자들의 다음과 같은 자적은 오늘 한 시대를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하다.

"힘들고 고단했던, 그러면서도 정당했던 지난 시절의 싸움이 문국진씨의 뒷이었다면 그의 아픔을 살피고 위로하고 재기를 돋는 것은 우리 모두의 뒷이다. 지금의 정부가 이런 아픔을 찾아 살피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결코 지난 시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정권의 야만적인 폭력에 짓밟혔던 이들을 외면하면서 문민정부가 화합과 단결 운운하는 것은 한낱 값싼 거짓말로 되고 말 것이다. 이 사람을 버려둘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합시다

문국진 가족에게 격려 편지를 보냅시다
각 단위별로 모금운동을 합시다
각종 언론매체에 알립시다
고문 관련 증거자료를 모읍시다
고문사례를 신고합시다

- 연락처 :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TEL 336-2951, FAX 335-1360)
- 문국진 자택(TEL 963-2383)

모금안내

문국진	주택은행 420802 92 104167
	국민은행 027 21 0568 670
	상업은행 126 08 171760
	조흥은행 371 06 147478

31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부류기호	자료번호
	B10.1	16

10여 년의 청춘을 앗아간 고문의 상흔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를 준비하며

사건 기록

고문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해인이 아빠

문국진 약력 및 사건경과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1993. 8. 7.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 준비위원회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를 준비하며

문민 정부가 들어서 모든 것이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오늘도 야수와 같은 군사정권의 발톱에 할린 상처받은 영혼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만 33세인 문국진 씨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네살박이 딸과 아내가 있는 한 집 안의 가장이지만, 1986년부터 시작된 정신분열증으로 이번으로 벌써 여섯번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문국진 씨는 대학 2학년 때인 1980년, 서슬푸른 전두환정권 하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치안본부 형사들의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을 1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후 86년까지 출판사 편집장을 하면서 정상인과 다름이 없이 활동을 하다가 86년 소위 '보임·다산' 조직사건으로 지명수배되었는데, 경찰이 집안에 대해 생업을 어렵게 할 정도로 가하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자수를 하고,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를 했던 청량리 경찰서는 치료는커녕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구타를 해대면서 독방에 가둬둔 채 병세를 악화시켰습니다. 문국진 씨는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분열증세가 나타나 몇 달씩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을 반복하여 이번까지 여섯 차례나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타까운 일은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고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보상이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도 본인에게 미칠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 그저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고 박종철 씨의 고문치사에 대해 대법원이 신원권을 인정하여 국가가 4천여만 원을 보상해 주라고 판결한 데서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문으로 인한 정신이상 증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회적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지 않는 한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현실에서 그동안에는 문국진 씨 본인을 위해 쉬쉬하며 지나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6월 26일에 발작을 일으켜 고대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는 문국진 씨는 그 며칠 전 아내에게 "내 한을 풀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날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아픈 상처를 안고 소외되어 간다는 느낌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국진 씨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더이상 문국진 씨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진술하고 유능한 문국진 씨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 결성될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는 앞으로 법정투쟁을 지원하는 한편, 고문 피해사례들을 모아서 널리 알리고, 이땅에 더이상 고문으로 인해 문국진 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등 모든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바랍니다.

1993. 8. 7

사건기록

□ 2학년 때인 1980년 10월경 서대문 시범아파트에 살 때, 새벽에 3명(서대문서 형사:현재 치안본부 근무)이 들이닥쳐 문국진을 데려감. 이때 연대 동기인 곽영진도 함께 들어가 조사받고 나옴.

□ 곧바로 부모가 따라갔으나 면회는 못했고, 그후 1달 만에 서대문서에서 면회를 했는데, 그때 문국진은 극히 초췌한 얼굴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애원함. 연세대 학생 1명(현재 안기부 근무)이 프락치 활동을 하여 잡혀간 것임.

□ 문국진이 서대문서에 끌려가자마자 서대문서 뒷골목 치안본부 대공과로 끌고가 고문 시작, 3일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발가벗기고 쌀가마니로 둘둘 말아 놓고 무조건 때리기만 함. 하루 종일 맞은 후 저녁에 감방으로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마를 받았지만, 새벽이 되면 고문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골방으로 끌려가 무조건 맞음. 치안본부 함재욱의 이름이 일기 곳곳에 나옴. 당시 함께 연행당해 조사를 받았던 연대 79학번 윤평호 씨가 문국진이 맞으면서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고문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음.

그 다음 입을 수건으로 가리고 대형 주전자로 코에 계속 물을 부었음. 이러한 물고문을 여러 차례 당하며 혼절함. 보다 못한 서대문 경사가 이를 말렸음. 현재 치안본부 자리(대공 수사과)에서 조사받았는데,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대라는 것이었음.

□ 그 당시 육군 소령이 관사(화곡동)에서 운동권 학생을 A, B, C급으로 판정하고 있음을 나중에 알았고, 부모님과 연줄이 닿는 육사 12기 이상원에게도 고문만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지금은 위낙 어려운 전두환 등극 시기라 어쩔 수 없다"고 함. 이후 형사는 고문 안 했다고 함.

□ 1년 형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개월만에 풀려남. 당시 변호사는 김익보 씨. 연대 동기들의 말에 의하면, 구속 사건이 있은 뒤 술을 마시면 그전과는 달리 주사가 무척 심했고,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함. 또한 본인은 현재까지도 날이 궂으면 온 몸이 쑤시고 특히 무릎이 심하게 저리다고 함.

□ 1986년 3월 25일 '보임·다산 조직사건'으로 신수동에 있었던 보임(편집디자인 기획실)에서 고경대, 박성인, 김상복, 혜중, 이범, 고성국 등이 잡혀갔고(3월 25일 새벽),

1, 2일 후 다산(성수동 사무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재차 잡혀가 총 10명 정도 구속되었음. 이 당시 사건의 배경은 보안사에서 노동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치안본부로 넘김(보임·다산 사건은 치안본부에서 조사받음). 구속된 후에는 지역 해당서로 이관시킴(구속자 중 5명이 2년형, 2명이 4년형을 받고 1~2년까지 복역하고 나옴). 구속되고 1, 2주 일 후 백원담, 문국진이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신문에 조직사건으로 발표됨(백원담은 1987년 대선 직후 수배해제, 문국진은 1993년 현재까지 복권 안 되었음).

□ 3.25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부모들이 이문시장 근처에 살 때 매일같이 청량리 경찰서(청경) 형사 10명이 집에 와서 문국진을 잡아오라고 협박. 아버지가 수색영장을 보이라고 하자 세 번만에 영장을 가져옴. 집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결국 쫓겨나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함. 또한 에딘버러 옷가게로 경찰이 와서 청경으로 부모를 데려가 “1달에 얼마씩 돈 대주나”며 육박지르고 수첩을 뺏었고 부모가 이튿날 수첩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내줌. 가게에 대공과 형사 10명 가량이 하루 종일 진을 치고 앉아 영업을 못하게 했으며, 가게를 빼라고 주인에게 압력을 넣음(가게 주인이 나중에 이 말을 부모에게 함). 또한 청경 계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을 자수시키면 학교 복학도 시켜주고 곧바로 내보내 주겠다고 계속 회유하며, 자수한 날(전국대학교 방화점거농성사건 직전, 10월 28일) 새벽까지도 그 상태로 포위하고 있었음.

□ 문국진은 수배 7개월 후 자수 직전 새벽(10월 26일경)에 전화함. “엄마 나 참을 수가 없어. 나 바깥에 있을 테니까 한길로 나와”. 벌벌 떨며 서 있던 문국진을 집으로 데리고 와 청경에 가서 자수시킴(마침 이때 경찰들이 없었음).

문국진만 남겨 두고 부모는 집으로 돌아옴. 청량리서 유치장에 구속된 후 내복을 들여 보냈으나 반입이 안 되고,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조사함.

조사내용은 '1. 백원담이 어디 있는지 대라, 2.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 3. 부천에 살던 집을 대라'는 것이었음.

□ 이후 3일만에 청경에서 집으로 연락이 와서 “사람이 이상하니 와서 보라”고 했음. 가보니,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고 사 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을 해댔는데, 현재 부모가 연로하여 잘 기억하지 못함.

문국진은 청경 구치소에서 자신의 오줌을 먹고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는 경찰, 전경들을 감시했음(‘이 놈은 괜찮은 놈, 저 놈은 안 좋은 놈’하며, ‘혁명이 되면 조놈은 어떤 직책에 앉혀야겠다는 생각들을 함’: 정신분열증 증상이 이런 것임). 이런 모습을 본 경찰들이 “이 새끼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또 다시 구둣발로 찹.

□ 1달 정도 있다가 성동구치소로 옮겨진 후, 이런 상태인 사람을 독방에 가두어 놓았

과장에게 자수시기겠다고 전화하자 청경 형사 3명이
어서 부모와 문국진 데리고 감.

음. 칸막이로 면회할 때 문국진 뒤에 3, 4명의 경찰이 항상 서 있었고 줄로 풍풍 묶은 채 면회시킴. 부모가 계속해서 검사(북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 달라고 애원했고 구치소 최고 간부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 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 만함.

□ 이후 김상철 인권위 변호사 회장에게 감.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자 검사는 움츠러들며 부모에게 다시는 인권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부모가 “자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내보내든지 병원에 보내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어떤 형사가 “건대 일이 터져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함(문국진이 자수한 지 [3일] 후 건대학생들이 청경에 3, 4명씩 계속 구속되어 들어옴).

보금 중간에 정신병원에 경찰과 함께 갔으나, 의사는 문국진을 발가벗긴 채 침대 위에 누이고 성기를 몇 차례 움직여본 뒤 별이상 없다며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냄(이때 문국진은 의사가 자신의 성기를 자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함).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감. 이때 문국진은 계속 소리를 지름.

□ 한편 북부 검사가 부모에게 각서를 요구(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달지 않겠다)한 후 부모가 각서를 쓰자 병원으로 보내게 함.

두 달 자수한 지 [1달 반 정도] 후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져서 곧바로 입원되고 관비로 담당의사 최용성 씨에게 의뢰됨. 최용성은 서울대 출신으로 같은 중앙중학교 선배라면서 잘 대해 주었고, 부모에게 성장과정 등을 묻고 “숨어서 맘이 불안하니까 병이 난 것 같다”고 했으며, 부모가 “병든 애를 빨리 처리하지 않고 병이 날대로 나게 했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함.

□ 87년 9월경 지금의 아내 윤연옥이 발병 이후 처음으로 문국진을 만났는데, 상당히 불안해 하며 한 장소에 오래 있지를 못함. 다음 날 운동권 노래책을 갖다 달라면서 “내일 내 병실생활을 한번 보여 주겠다”(당시 외래치료: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서 출퇴근하듯이 하루를 병원에서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면서 치료받음)고 해서,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다시 입원했다고 함. 그날 윤연옥은 담당의사 최용성을 처음 보았는데, 그는 윤연옥 씨가 여러 모로 문국진 씨에게 위로가 되어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음. 최용성 씨는 문국진 씨가 아이큐 130이 넘는 우수한 두뇌와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으며 또한 필력이 뛰어나 사회에서 한몫을 할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솔직한 심경을 말함.

□ 이후 한 해에 한 번씩 재발이 되었는데, 1989년 입원할 때는 이를 동안 잠을 안잔 상태로 당시 다니던 출판사에 출근했으며, 밤에는 책상에 앉아 손목시계만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난폭해져 쿵쿵거리며 방을 돌아다니고 창문을 열어젖히고 임신 7개월인 아내에게 어떤 얘기를 해달라고 하며 잠을 못자게 함. 1990년 입원할 때는 입원하기 1주일 전쯤 회사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 “이혼하자”고 함. 밤에 들어온 문국진에게 아내가 이혼의 이유를 묻자 “당신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안기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조용한 카페로 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건 나다. 내가 왜 너를 안기부에 보고하겠는가”라고 하자 눈알을 돌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음. 그 상태에서도 진실은 통했는지 문국진은 이혼얘기는 거두겠다고 함. 이후 전화가 도청되고 있으니 전화번호를 바꾸자고 했으며,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장소를 옮기며 불안해 함(경찰이 미행한다고 생각함).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 부인에게 다가가 목을 조름. 부인은 생후 7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내복바람으로 뛰쳐나와 피했음. 문국진은 다음 날 고대부속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에서도 한동안 “여기가 치안본부냐”면서 안정을 찾지 못했음.

□ 결혼 후 이사할 적마다 관할서에서 한 번씩 찾아왔으며 최근 3년간은 직접 찾아오지 않다가(주인집에 근황을 물어 봤을지도 모름) 1993년 4월 21일경 청경 보안2계 이문 3,1동 담당 홍세균이 찾아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청경에 김낙현 씨가 아직 있는데 얼굴 부딪히면 서로 뭣할 것 같아 내가 찾아 왔다”며 뭔가 부담을 갖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고, 문국진이 “수배당하면서 난 병이다. 국보위에서 난 병”이라고 하며 애써 적개심을 감추자 “비판적으로 살지 마라. 운동해도 좋다. 아, 개운하다. 개운하다. 한번은 꼭 만나 보려고 했다”고 말한 후 돌아감. 그후 이를 동안 문국진은 잠을 자지 못했음.

고문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해인이 아빠

- 문국진 씨의 아내 윤연옥 씨가 보내는 호소문 -

제 남편은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오가며 청춘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회가 민주화를 위해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을 껴안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앞으로도 극에서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글을 드립니다.

제 남편은 1979년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 1987년 복학, 1988년 졸업한 사람으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다가 받은 고문 때문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생활비는 제가 출판사를 다니면서 벌고 있으며, 저희는 4살된 딸아이와 함께 전셋방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993년 6월 26일(토)자로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정신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기 1주일 전부터 남편은 이를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집안에 도청장치가 돼 있다는 의심을 하는 등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6월 26일 낮 12시경 주인집 손녀딸(6세)이 우리집 아이와 놀기 위해 놀러왔는데, 남편은 “너 왜 인형 가지고 갔어? 도둑질하면 나쁜 거야. 빨리 갖다 놔”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하던 남편이었으므로 저는 놀라 뛰어나와 그 아이를 얼른 돌려보냈는데, 잠시 후 화가 난 아이 엄마가 올라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삿대질이 오가면서 홍분한 남편은 장난감 차에 꽂혀 있던 쇠파이프를 빼들고 베란다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인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우선 참아 달라며 일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엄마가 신고하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홍분이 극에 달해 “나도 신고하겠다”며 유리창을 깨부수었고 손에 상처를 입어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남의 집 안방으로 피신을 했고, 잠시 후 신이문 파출소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남편은 경찰을 보자 더욱 날뛰었고 경찰차 밑으로 몸을 깔면서 “나를 데려갈 테면 데리고 가 보라”며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 젊은 사람이 안됐다는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연로하신 시부모님들은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몸이 노끈으로 꽁꽁 묶인 채 경희의료원으로 실려가 손을 치료받은 뒤 고대부속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아이가 잘 안 가지고 놀기에 제가 버린 인형을 주인집에서 주워 손녀딸 방에 걸어둔 것이었는데, 남편은 주인집 꼬마가 인형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약하므로 작은 일에도 보통 사람보다 몇 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 자극이 가해지자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연대 철학과 2학년 재학중이던 1980년 10월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이적서적물이란 증거물로 채택되어 반공법으로 서대문서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뒤 1986년 3월 25일 '보임·다산' 조직사건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었다가, 그해 초겨울 부모님과 함께 자수해 청량리 경찰서에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직후 남편은 자기가 눈 오줌을 먹고, 발가벗은 채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며 광란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나, 형사들은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독방에 가두고 발병 할 때마다 구둣발로 온몸에 명이 들 정도로 찼습니다. 중간에 경찰관 입회하에 국립정신 병원에 간 적도 있으나, 의사는 남편을 발가벗기고 침대에 누인 채 성기를 몇 번 훔들어 보고는 아무 이상 없다며 다시 청량리 경찰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즈음 건국대 방화농성사건(1986. 10. 30일경)이 터져 경찰서가 바빠지면서 남편은 한 달 반 동안이나 그 상태로 경찰서에서 방치되다가 결국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관비로 입원했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남편이 "숨어서 지내느라 병이 든 것 같다. 머리가 뛰어나고 심성이 부드러워, 사회에 단단히 한몫 할 사람이었는데 안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 재발되어 거의 한 해에 한 번씩 입원을 했는데, 한 번 입원을 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은 입원할 때마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집안에 도청이 돼 있다. 안기부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며 공포와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1990년 10월경에 입원할 때도 "안기부에서 나와서 너를 강간하지 않았느냐. 나의 행동을 일일이 안기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보통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피곤해 할 때면 "물고문과 전기고문(90년 입원 때 전기치료를 받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안 당해도 되니 그래도 살만하지 않느냐"면서 자신과 저를 위로했습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리기 전 남편은 말수는 적었지만 사려 깊고 유머도 있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남편의 나이 이제 34세, 엄마 아빠의 속정을 느껴가며 한창 예쁜 짓을 하는 천진한 딸 아이와 절망하기에도 지친 아내를 두고 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면회간 저를 보며 남편은 "몸이 피곤해서 어찌느냐"면서 쾌한 눈으로 웁니다.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잠자는 애를 껴안고 남편 몰래 운 적도 많습니다. 안락한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다른 가정을 부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내 남편의 고통을 함께 껴안고 겪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더이상 주저앉아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방을 빼달

라고 하고, 어떤 아이 엄마는 우리 딸아이와 노는 자기 애를 테려가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무참히 짓밟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980년대 살얼음판 같은 제5공화국 시절 소위 '운동권' 사람들에게 자행되었던 무자비한 투옥, 고문의 현장 속에서 한 인간이 이렇게 파괴되었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한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시킨 잔혹한 고문, 고문의 두려움으로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미친 척한다며 그대로 방치한 살인적인 행위는 이제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대화합을 이루려는 문민정부라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안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몸짓들이 모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극에서 극이 아닌 국민대화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줄입니다.

문국진 약력 및 사건 경과

문국진은 1960년 3월 16일생이다. 넉넉지 못한 가정이지만 부모님들은 욕심없고 근면하게 살고 있다(현재 아버님 69세, 어머님 61세). 형제로는 4살 위인 형이 하나 있다. 문국진은 어릴 때부터 가족 및 친척들과 서대문에 있는 충정교회를 다녔으며 학생회장을 하는 등 소년기를 평탄하게 보냈다. 철학과는 본인의 뜻에 의해 지원한 것이며,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민중교회(신명교회와 동대문에 있는 청암교회)를 간간이 나가고 있다.

- 1973년 서울 미동국민학교 졸업
- 1976년 서울 중앙중학교 졸업
- 1979년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 1979년 연세대학교 철학과 입학
- 1980. 10월경 : 반공법으로 서대문서 구속, 1년 형 2년 집행유예 선고받고 3개월 만에 나옴
- 1983~85년 도서출판 화다 편집장
- 1986년 3월 25일 보임 · 다산 사건으로 전국 지명 수배
- 1986. 10월말경 : 청량리경찰서 자수 구속, 정신질환 발병
- 1986. 12. 12~1987. 2. 28 : 정신분열증으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입원(관비)
- 1987. 8. 29~87. 9. 20 :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재입원
- 1987. 9. 21~12. 8 :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낮병동 다님
- 1988. 9. 10 : 결혼
- 1989. 3 : <반제반파운동론> 저술(온누리 출판사 다니면서)
- 1989. 8 :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9. 10. 30~11. 27 : 동서문화사 3개월 다니던 중 재발,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재입원
- 1990. 6 : <혁명이론의 빈곤> 저술
- 1990. 2. 28 : 딸 출산
- 1990. 10~1991. 3 : 고려대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입원(한울 6개월 다니던 중 재발).
<시가 있는 아포리즘> 출간 준비했으나 책으로 나오지 못함
- 1993. 6. 26 : 고려대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입원
병명: 정신분열증, 피해망상, 인간관계 망상, 편집증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1. 대책위원회 활동의 목적

- 1) 문국진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병의 치료와 주변 여건을 갖추기 위한 제반 활동을 모색한다.
- 2) 법정투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 3) 고문의 반인간적 폐해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활동을 한다.

2. 주요 활동내용

- 1) 신병 치료와 법정투쟁 등 활동을 위한 기금모금
각 소모임별로 책임자를 정하여 적극적인 모금사업을 벌인다
언론 및 각 운동단체의 기관지를 통한 대중 모금사업
자금마련을 위한 기타 사업(하루찻집 등)
- 2) 법정투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 확보
80년 고문시 관련자들을 최대한 알아낸다(79학번, 인간연구회 등)
다산·보임 사건시의 고문을 입증할 여러 자료와 증언
기타 정황을 증거할 수 있는 각종 언론자료
- 3) 문국진 고문사례를 중심으로 고문 문제를 사회문제화

3. 그간의 경과와 언론 보도 내용

- 7. 27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 준비위 발족
- 7. 9 연대 79학번 모임
- 7. 20 한겨레신문 '동네방네' 기사 실림
- 7. 23 문화일보 '과거는 물어야 한다' 기사 실림
- 9월 '밀'지에 기사 나올 예정

<대표인사>

고문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박 정 기(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대표)

지난 5월4일 우리에게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1년7개월을 끌어왔던 문국진씨의 재판이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경상도 땅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재판부가 국가로 하여금 문국진씨에게 배상판결을 내렸다는 것,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기뻤던 소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는 모였고, 이 모임을 만들었고, 그동안 무엇을 바라고 우리들 주머니돈을 털었습니까?

난 이번 승리는 문국진씨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직도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어려운 결론을 내게 되다니 너무도 기쁩니다.

그동안 이 모임의 대표로서 한 것도 별로 없는 저이지만, 꼭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변호를 맡아준 백승현 변호사와 변호인단 여러분,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써주시고 증언에도 나와 문국진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해준 배기영 의사 선생님, 윤연옥씨와 문국진씨의 부모님, 또, 연세대학교 동문들, 보임다산의 사건의 동지들, 문국진씨의 소식을 듣고 함께 해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이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져준 많은 분들, 실무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흡족한 판결을 내리진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일보한 판결을 내려 소생의 기쁨을 준 재판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는 이 모임을 만들면서 거창한 약속보다는 문국진과 그의 가족들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다짐을 이제 겨우 하나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문국진씨의 이 법정투쟁은 군사정권 시절고문범죄를 단죄하는 선봉에 선 싸움입니다. 우리는 문국진 그 사람 하나 배상받는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 아직도 악몽의 기억을 떨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희망이 되어야 하고, 다시는 고문이 이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또, 이번 재판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문의 가해자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문국진, 그는 병원생활을 마치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늘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늘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합시다.

정말 수고하셨고, 너무도 고맙습니다.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 1심재판경과>

1993년 10월 13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명동 향린교회에서 발족함.

대표 박정기(박종철열사 부친)

부대표: 인재근(김근태씨 부인), 최의팔(청암교회 목사),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최민화(연세민주동문회 전회장)

1993년 10월 14일 변호인단(이돈명, 이석태, 백승현, 조용환, 김형태)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 청구취지: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문국진, 文國鎮)에게 금 2억원을 지불하라.

* 소장의 주요내용: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후 3일간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여 원고가 발병하게 되었다.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오히려 폭행을 가했다. 성동구치소에서도 독방에 수감되어 고통을 받는 등으로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원고의 증세는 국제질병분류 기호 298.4로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Diagnosis: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결국 피고는 고문을 행하고, 그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원고를 전혀 구호치 아니해 원고의 모든 소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고는 위 고문행위와 발병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였다. 더구나 향후에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소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이 명백한 바, 이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금 10억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로 이른 것이다.

1993년 11월 18일 서울민사지법 제559호(민사합의13부)에서 첫 재판 열림. 이날 백승현 변호사는 문국진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재판부에 요구, 이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1993년 12월 27일부터 1994년 1월 12일까지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남궁기씨로부터 정신신체감정을 받음.

1993년 12월 29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은 국회에 1천여명의 시민서명과 70여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을 함.

1994년 4월 11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등 3개 단체는 서초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 사회 강당에서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를 가짐.

1994년 4월 12일, 문국진씨 고대구로병원에서 퇴원함.

1994년 6월 8일, ‘고문피해자 문국진 · 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행사를 연세대에서 가짐.

1994년 6월, 문국진, 김종경, 방양균, 김복영, 강환웅씨의 가족들은 정부에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집단적인 청원을 함.

1994년 7월, 유엔제네바 센터내 고문피해자원호기금에서 문국진씨의 치료와 원상회복을 위한 활동에 쓰라고 5천달러의 기금을 보내옴.

1995년 1월 29일, 문국진씨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고대구로병원에 입원함(일곱 번째)

1995년 2월8일, 유엔고문방지조약 발효됨.

1995년 3월16일, 초기 배상청구액 2억원에 1억을 추가로 더 청구 총 3억을 배상청구함.

1995년 5월4일까지 5차례에 걸친 심리과정, 2두차례의 선고 연기가 있다가 5월4일 재판부는 선고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원고측 증인으로 배기영박사(동교신경정신과 원장, 인의협 공동의장)과 김여옥(문국진씨 모친)이 출석하여 문국진씨가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받던 과정과 치료과정에 대해서 증언함. 특히 배기영박사는 문국진씨의 병세에 대해 자세히 증언함.

* 모임이 결성되어 활동하는 동안 문국진씨 두 차례에 걸쳐 13개월동안 고대구로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했음.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는 그동안 문국진씨의 치료비와 생계지원비, 소송비용등으로 약 3천4백만원을 모금하여 지원함(자세한 내용 회계보고 참조).

사건의 주간이다

<1심 판결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 참조 바람)

항소
액수↑

1. 원고에게 피고(대한민국)는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

② 1억4천만원, 지난해에 24개월.

2. 공소시효는 당시의 고문행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던 피해를 알았던 때(의사소견서가 작성된 시점)를 기준으로 해야 함으로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는 경찰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고문을 가했다는 점과 구호의무를 이행치 않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경찰측은 반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 공소시효를 빠껴갔다. / 그간 공소시효로 인해 사건 해결

① 시효제로 제거되었음

항후적자 → 강수 (단계별거야).

경찰지휘로 청량리 경찰서로.

항상 할 뜻.

② '가지않음' → 지침을 놓았을 것:

경찰지휘로 초기에 임의로

지침을 놓았을 것. '가지않음'로

"좀 더 더 낫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

<1심 재판 판결문 전문>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부

판 결

사 건 93가합76915 손해배상(기)

원 고 문 국 진 (文 國 鎮)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 고 대한민국(大韓民國)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안 우 만

소송수행자 박찬홍, 김영창

변 론 종 결 1995. 3.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77,887원 및 이에 대하여 1993.10.28부터 1995.5.4.까지
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9,071,5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5 내지 8, 11, 14, 16 내지 19, 21 내지 24, 27 내지 34, 37, 39, 을제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기영, 김여옥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부속 신촌세브
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반증 없다.

(1)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는 1986.3.25. 원고가 소외 고성국 외 7인과 함께 1985.경 다산기획
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불온서적 및 불온 유인물을 제작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등을 의식화시켜
각 지역운동세력을 연합하여 연합전선을 결성, 민중봉기에 의한 폭력혁명을 유발하여 독재정권과
제국주의를 타도, 민족민주혁명을 완수한 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획책하여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에 동조, 적을 이롭게 하는 등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여 위 다산기획 관련자 중 위 고성국외 6인을 검거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백원담을 검거하지 못하여 그들을 수배조치하였는데, 원고는 수배된 이후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가 원고에 대한 검거책임을 맡은 경찰관들이 수시로 원고의 부모가 경영하던 옷가게에 찾아가 원고의 행방을 추궁하고 위 옷가게 앞을 지키고 있어 손님이 감소하는 등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모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0.27.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자수하여 위 경찰서에 연행되어 간 후 위 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장 소외 김낙현등은 원고를 상대로 위 다산기획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다산기획사건의 관련자로서 당시 검거되지 않고 있던 위 백원담의 행방에 관하여 추궁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행방을 모른다고 하자 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원고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자 3일 동안 잠을 제우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였다.

(3) 원고는 위 자수일로부터 1986.11.3까지는 위 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다가 같은 달 4.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집행되어 그날로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위 경찰서 유치장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11까지는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부모들인 소외 문재호, 김여옥이 위 자수일로부터 3일후인 같은 해 10.30. 위 경찰서로 원고를 면회가서 사가지고 간 통닭을 내어놓자 원고는 원고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하려 하느냐”하면서 몸을 비비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등 발작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위 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하루 1, 2회 정도 몸을 심하게 떨며 수용되어 있던 소외 장이환이 원고에게 말을 걸면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답변을 하고 보호실벽을 넘으려 하는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인 같은 해 12.5. 위 문재호, 김여옥이 원고를 면회하러 갔을 때 몹시 흥분된 상태로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였으며, 담당검사로부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고 귀소한 후 19:00경 거실창가에 서서 갑자기 “재판장 이 새끼야 나오너라”하며 소리를 치는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취침시간 이후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서성거리며 시간마다 몇시냐고 묻는등 횡설수설하고, 같은 달 6. 9:20경 거실창문을 부수고 변소에서 오물을 펴내어 복도에 던지다가 위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정제 주사를 맞고서야 진정이 되었으며, 같은 달 7. 거실내에서 서성거리며 계속 구치소 근무자를 불러 전후가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12:00경에는 식사를 하다가 밥을 창문 밖으로 던지면서 “○○○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3회 제창하였으며 16:00경에는 답답하다고 하면서 출입문을 밟아 3회 차는 등의 행동을 하고, 같은 달 8. 11:30경 밥을 창밖으로 던지며 “먹을 사람 먹어라”라고 소리치고 12:30경 거실문을 밟아 차서 자물쇠뭉치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후에도 간헐적으로 문을 차며 배식된 음식을 집어던지고 자다가 자주 일어나 횡설수설 중얼거리며 방안에서 서성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자신이 배설한 변을 먹기도 하였으며 밤마다 큰 소리로 민주방송이라는 것을 하였다.

(4)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발작 및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자 동산병원 및 경희의료원에 테리고 갔던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후 원고가 계속하여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치료 기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일부러 미친 척한다고 하면서 원고를 유치장 독방에 수용하였으며, 원고가 검찰 송치 이후 위 구치소 담당공무원들은 위 구치소 의무과장 소외 이기린으로 하여금 1986.12.6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원고를 진찰하도록 하여 위 이기린이 원고에게 진정제 주사를 놓아주고 같은 달 8. 최상섭 신경정신과 원장인 소외 최상섭으로 하여금 원고를 진찰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최상섭이 원고의 증세를 구금상태에서 볼 수 있는 구금성장애로 판단하여 추후 진찰 및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진단하고 위 문재호, 김여옥이 계속하여 원고의 치료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상증세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고 포승에 묶어 놓았으며 약 4일간은 원고를 징벌방에 수용하기도 하였다.

(5) 그후 검사의 감정유치청구에 따라 원고는 1986.12.12.부터 1987.2.28.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같은 달 27. 위 병원 의사 소외 최용성은 원고의 증세를 정

신분열병양(様)장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해 3.4.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6) 원고는 그후 병세가 호전되어 출판사에 취직을 하고 1988.9.10. 소외 윤연옥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29.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1990.2.28. 딸을 출산하기도 하였으나 1993.6.경에 이르러 쉽게 홍분하며 화를 내고 딸을 때려죽이겠다고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기타 편집증적 사고, 이자극성, 과대망상, 피해망상, 수면장애,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장애, 통합적 사고력 감소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6.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경 퇴원하였으나 퇴원후에도 계속 위와 같은 이상증세를 보여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1960.3.16. 생으로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3.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였다가 3학년 2학기에 학교를 중퇴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산기획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등 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위 경찰서에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계에도 그러한 질병을 앓은 사람이 없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정신분열증은, 위 다산기획사건으로 수배되어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원고의 가계에도 정신질환을 앓은 자가 없었는데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3일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일이 있고 난 후 비로소 발병된 것이라 할 것인데 나아가 그의 이같은 증상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계속 발작 및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사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징벌방에 가두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수사관계자등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87.2.28.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결과가 나왔을 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93.10.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된 후 출판사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여 딸까지 낳는 등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다가 1993.6.에 이르러 갑자기 발작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 할 당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6년여가 경과하여 다시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날 것을 예견 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위 발작증세가 새로이 나타난 1993.6. 비로소 위 새로이 발생한 증상에 따른 손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해 10.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당시인 1986.12.11.의 현가로 계산한 금 36,716,38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내용

(가) 성별: 남자

(나) 주거생활권: 도시지역인 서울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월 25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 상당 (1993. 현재 월 금 530,000원($21,200 \times 25$), 1994. 현재 월 금 557,500원($22,300 \times 25$), 1995. 현재 월 금 680,450원($27,218 \times 25$), 원고는 30 내지 34세 사이의 남자 대졸자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대학을 졸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시인 1993.10.14.부터 60세가 되는 2020.3.16.까지(경험칙)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정신분열증

가동능력 상실비율: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20%, 재발기(1년에 2월)에는 100%

[증거]

갑제3호증, 갑제4, 8 내지 10호증의 각 1, 2,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원미만,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고, 중간의 월미만은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에 삽입한다)

(가) 기간

1) 1993.10.14.부터 1994.1.13까지: 3개월

2) 그 다음날부터 1995.1.13.까지: 12개월

3)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20.3.13.까지: 302개월

(나) 현가

1) $530,000 \times (1 \times 2/12 + 0.2 \times 10/12) \times (73.3702 - 71.1548) = 391,387$

2) $557,500 \times (1 \times 2/12 + 0.2 \times 10/12) \times (82.0328 - 73.3702) = 1,609,799$

3) $680,450 \times (1 \times 2/12 + 0.2 \times 10/12) \times (235.0868 - 82.0328) = 34,715,198$

4) 합계 금 36,716,384원

나. 항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치료내용: 항후 혼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정신분열증의 만성화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외래에서의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재발기(1년에 2월)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함.

(나) 치료기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1995.3.17.부터 원고의 여명기간인 2030.7.11.까지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다) 치료비: 호전기(1년에 10월)에는 월 금 376,854원($9,044,500 \div 24$), 재발기(1년에 2월)에는 월 금 1,000,000원이 소요되어 매월 금 480,711원($376,854 \times 10 + 1,000,000 \times 2 \div 12$)의 치료비가 소요됨.

[증거]

위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기간

1995.3.17.부터 2030.6.16.까지: 423개월

(나) 현가(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480,711 \times (277.2461 - 83.4467) = 93,161,503\text{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이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장애발생의 경위,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금 10,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77,887원(일실수입 금 36,716,384원+향후치료비 금 93,161,503×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0.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5.5.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탁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에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5.4.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파사 박은영

파사 철혜리

<1심 재판 소장>

소장

원고 문국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의 3(창림빌딩 2층)

피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두희

손해배상 청구의소(기)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3.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다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10. 청량리 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자수후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에서 경사 김낙현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원고를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사건으로 수배된 백원담의 행방 등에 관해 집요한 질문을 하였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며 취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3일동안 부모등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 폐쇄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없이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취조를 당하였고, 3일이 지나 부모와 처음 면회를 했을 당시 부모가 사간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 같이 고문시키려 사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 당시 경찰은 부모와의 면회를 불허하다가 당일 사람이 이상하니 보려오라고 하여 처음 면회를 하였을 때 원고는 이와 같이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원고는 유치장안에서도 자신의 오줌을 먹는등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어 경찰은 오히려 일부러 미친척한다 하여 구둣발로 차는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 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마. 이 사이 원고의 부모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문적 치료를 호소했으나, 위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송치후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을 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원고를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케 했으며,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원고는 그후 계속해서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증세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Diagnosis: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으로 국제질병 분류기호 29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 분류 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이며 298.4는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여는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다”입니다)

사. 결국 피고는 고문을 행하고, 그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원고를 전혀 구호치 아니해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고문행위와 발병후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향후에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임이 명백한 바, 이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금 10억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진단서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993.1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 돈 명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1. 소송 제기 및 청구 항목
2. 소송 거래 상황 및 청구 항목

1. 소송 제기 및 청구 항목

2. 소송 거래 상황 및 청구 항목

3. 소송 제기 및 청구 항목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취지서>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우리는 지난 5·6공의 수많은 고문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 사건중에 몇몇 사건은 이미 법의 심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시기의 고문의 실상과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며 심지어는 당시의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국진동지가 지난 86년 소위 '보임다산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고문후유증을 자신과 가족의 뜻으로만 여겨 왔고, 사회와 정부에서 방치해왔음을 알았고, 이에 우리는 문국진동지의 폐유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고문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10월 13일『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 다시 거론할 것도 없이 인류문명의 죄악이며, 가장 추악한 적이라고까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규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런 고문방지의 정신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무런 유보조건없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지난 시기에 저질려진 추악한 고문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의 김삼석 남매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도 공권력에 의한 고문은 남아 있으며, 문국진 동지와 같이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다수라는 사실 앞에서는 정부의 고문 근절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정권하에서 고문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였던 책임자들을 명확히 가려 처벌하는 일과 아울러 고문을 일삼았던 기관의 민주적인 개폐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난 시기에 고문을 당했던 이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만약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고문 문제는 단지 그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도 매우 크다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지난 시기에 저질려진 고문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하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구제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기의 고문문제라고 헤서 단지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고문 문제를 엄격히 다룸으로서 다시는 이땅에서 고문이 발생하지 않고,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의사 소견서〉

1. 인적사항

성명 : 문국진

주민등록증번호 :

주소 : 서울시

2. 진단명 :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

Diagnosis :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기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 ICD-9) : 298.4.

3. 소견

문국진씨의 경우 미국정신의학회의 분류기준(DSM-III-R)에 따르면, 다른 만족스러운 항목이 없어서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에 해당됨.

그러나 가족 병력, 병전 인격, 병후의 일상생활 기능을 보아서 썩 부합되는 것 같은 인상이 아님.

DSM-III-R이 ICD-9보다 최근에 개발되어 많은 정신과 의사가 사용하고 있으나, 병의 분류, 특히 정신분열증의 분류는 아직 모호한 면이 많이 있고, 최종적인 것은 아님.

ICD-9의 Categories 298.0 ~ 298.8은 최근의 생활경험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기인된 정신병적 조건을 가진 작은 군에 제한되어지는 병명으로서, 특히 298.3 급성편집증적 반응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들은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고 한정되어 있고, 298.4.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은 298.3에 망라된 급성 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여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정의됨.

문국진씨의 경우 1980년 및 19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심한 비인도적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위 진단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덴마크의학회에서 1980년 11월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35명 중 101명(74.8%)에게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의학적 이상 증상이 나온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또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분열증양(schizophrenia-like) 증상이 있다는 보고 등을 감안할 때; 고문 후유증으로서,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소견을 제출함.

—— 1993년 9월 13일.

의사면허 : 18571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배기영.

동교신경정신과의원 (333-3572)

<고문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공동사업 제안서>

1. 고문방지조약의 완전한 실천을 요구하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은 전체 고문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 문국진씨의 사례를 집요하게 문제제기하여 고문후유증에 대한 일보 전진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는 일단 성공하였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보여준 모범은 인권 침해자의 문제를 풀어가는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활동을 통해 고문의 원래적 성격, 고문후유증의 심각성, 고문방지조약의 홍보, 고문후유증 피해자의 법정투쟁을 통한 1차적인 승리 등 많은 의미있는 일들을 해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활부조와 재판비용의 부담도 매우 큰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체 고문피해자의 문제, 고문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사업들은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권운동과 인권전문가들이 같이 나서야 한다. 고문방지조약에 담긴 뜻 그대로 이 나라에서 고문을 완전히 추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게 되었다.

2. 고문 관련 주요사업들

- 가. 고문피해 사례의 수집, 피해자 상담
- 나. 고문 또는 고문후유증에 관한 연구
- 다. (가칭) 고문방지특별법 제정
- 라. 고문피해자 법률구조
- 마. 고문피해자 재활센터의 건설
- 바. 고문방지조약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
- 사. 고문추방감시센터의 건설
- 아. 고문백서 발간

3. 「유엔 고문방지조약 민간단체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자.

가. 「유엔 고문방지조약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의 의미

- 정부 보고서만 제출될 경우 정부의 견해가 유엔(국제사회)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 고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작업을 할 수 있다.
- 고문의 근절을 위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 고문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획득한다(고문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고문근절을 위한 이후의 사업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나.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시한-보통 기한은 연기되지만, 일단은 내년 2월전까지

다. 보고서 작성 참가단위-각 인권단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라. 보고서 작성의 의미에 찬동하는 단체나 전문가들을 모아서 오는 6월말경 첫 모임을 갖고 이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후 각 영역별 조사 사업과 집필과정, 정부에 대한 공동토론 제안, 국내 심포지엄을 이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

마. 한글 보고서 작성 후 영문 번역하여 제출하고, 심의에 대표를 파견한다.

바. 연락처: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전화: 715-0185)

Brief Personal Records of Moon, Kook-jin

Moon, Kook-jin was born of a poor family on March 16, 1960. However his parents are unselfish and diligent. His father is 69 years old and his mother is 61 as of 1993. His brother is elder than him by 4 years. Since childhood has Moon, Kook-jin attended the Choong-jung Church at Seodaemun area, Seoul, where he has once worked as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of Christian Students. In general his boyhood ran in a groove. After he entered the philosophy department of the Yonsei University just as hoped, he used to attend the Minjung churches or the people's churches — the Shinmyong Church and/or the Chung-am Church in Tongdaemun area, Seoul.

- 1973 Graduates from the Meedong Primary School.
 - 1976 Graduates from the Choong-ang Midle School.
 - 1979 Graduates from the Yongsan High School, and enters the philosophy department of the Yonsei University.
 - October, 1980 Arrested under suspicion of violating the Anti-Communist Act, and released after three month custody by the sentence of one year servitude with a stay of execution for two years.
 - 1983 - 1985 Works as the chief editor of the Hwada Publishers.
 - March 25, 1986 Put on the wanted list due to the Boim-Tasan Case.
 - October, 1986 Put into custody with self-surrender at the Chungryangri Police Station, and falls into the mental disease.
 - December 12, 1986 - February 28, 1987 Hospitalized in the National Mental Hospital for the schizophrenia (at the government expenses).
 - August 29, 1987 - September 20, 1987 Rehospitalized in the National Mental Hospital.
 - September 21, 1987 - December 8, 1987 Attends the hospital as an outpatient.
 - September 10, 1988 Married with Youn, Yon-ok.
 - March, 1989 Works in the Onnoori Publishers, and writes *On the Anti-Imperialist and Anti-Fascist Movement*.

Name of Disease : Schizophrenia, Delusion of Persecution,
Monomania, Depersonalization.

Course of Incidents

- In a dawn of October 1980 when he was a sophomore of the Yonsei University, Moon, Kook-jin was taken from his small apartment named Seodaemun Sheebom Apart to police by 3 gumshoes — who are now being assigned to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e [HQNP, hereafter] — of the Seodaemun Police Station. Moon's classmate, Kwak, Young-jin who was set free soon after being investigated had been also hauled to police at that time.
- Moon's parents visited the police station right away, but were not allowed to see him. When his parents met him after one month at the Seodaemun Police Station, he implored with worn-out look them to clear up his troubles as soon as possible. He was taken to police owing to fraction activities of a classmate who are now working in the Planning Board for National Security [PBNS, hereafter] or former the KCIA.
- Immediately on his arriving at the Anti-Communist Section of the HQNP near by the Seodaemun Police Station, tortures were given to him. Without being asked any question for 3 days, every day he was twirled in a rice-sack made of straw after being nakedized, and was drubbed all day long from sunup to sundown. People who were also under investigation took care of him with massages every night after he was sent to his police cell. A name of Ham, Jae-ook of the HQNP is found here and there of Moon's diary thereafter. Moon's classmate in the Yonsei University named Yoon, Pyung-ho who entered the university in 1979 and was also under investigation not only heard Moon's shrieks of tortures but also witnessed the tortures.
And then Moon was tortured to fainting several times as the torturers poured water out of a kettle onto his face covered with a towel. The tortures were so brutal that a police sergeant of the Seodaemun Police Station checked the water-tortures. The request of the Anti-Communist Section of the HQNP for Moon was to confess the list of comrades who had worked together with Moon, Kook-jin.
- It has been known afterwards that an army major was classifying the dissident students into A, B and C at his official residence located at HWAGOK-dong, western part of Seoul. Moon's parents, knowing after they saw him at the police station that their son was under ruthless tortures, met an acquaintance named Lee, Sang-won who was one of the 12th-time graduates of the Military Academy to entreat him to stop the tortures at least, and

heard his answer saying: "I can do nothing for him, bacause now is the very tough time due to Chun, Doo-hwan's drive to mount the throne." Anyhow a plainclothes man told his parents afterwards that police had stopped torture thereafter.

□ Moon was set free after 3 month detention for he was sentenced to one year servitude with a stay of execution for two years. Lawer Kim, Ik-bo argued the case for him. According to his classmates in the Yonsei University, he loses his temper over his cups after the detention, and gives pinches and even thrashes onto persons near him. And he complains of sharp pains all over his body and severe numbness in his knees, when the weather is nasty.

□ On March 25, 1986, Kyung-dae Ko (Ko, Kyung-dae), Sung-in Park (Park, Sung-in), Sang-bok Kim (Kim, Sang-bok), Hue-joong, and Sung-kook Ko (Ko, Sung-kook) of the Boim Book Design \$ Planning Company at Sinsoo-dong, Seoul were hauled to police, and in a few days in succession several persons of Tasan Book Design \$ Planning Company at Sungsoo-dong, Seoul were also taken to police, resulting in detention of about 10 persons on suspicion of organizing a anti-state organization (the so-called Boim-Tasan case). Though the arrestees were investigated in the HQNP, the Boim-Tasan case was handed over to the HQNP from and by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or the Military Intelligence Command which had inspected labor movements. About one and two weeks later after the detention, (Ms) Paek, Won-dam and Moon, Kook-jin were put on the most wanted list, and the Boim-Tasan case was revealed on mess media as a criminal organization. Among the arrestees, 5 persons were sentenced to 2 year servitude and 2 persons to 4 year servitude. However they were all released after 1 or two year imprisonments. Moon, Kook-jin has not yet been rehabilitated as of 1993, whereas Paek, Won-dam obtained release from the wanted list just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late 1987.

□ Moon's family, running a small clothes shop, lived in a rented house near the I-moon Market in the eastern area of Seoul, when the Boim-Tasan case occurred. Since the very occurrence of the case 10 detectives from the Chungryangri Police Station [ChungKyung, hereafter] surged into Moon's house every day to threaten Moon's parents to bring Moon to police. They could present an arrest wattant barely at the third day, though Moon's father strongly asked them to show it from the first. As the police forced the house owner to drive out Moon's family, they had to move to a very small underground room for rent. Furthermore the police took Moon's

parents to the ChungKyung to frighten them by shouting "How much money do you secretly supply to your son every month?". They even deprived Moon's parents of the pocketbooks, though they return them at the very next day in response to protests. Around 10 Anti-Communist gumshoes stopped at Moon's parents' clothes shop every day to interrupt the business, pressuring the shop owner to drive Moon's family out of the shop (according to the shop owner thereafter). On the other hand, a section chief of the ChungKyung tried continuously to win the favor of Moon's parents saying that they would set free Moon right away and would arrange his reentrance to university if Moon's parents persuade him to surrender himself to the police. Yet the police encirclement around the Moon's house and family lasted until the very day (October 12, 1986) of his self-surrender (just some days before the famous Konkook University Sit-in Demonstration on October 28, 1986).

□ After 7 month flight Moon Kook-jin made a phone call at dawn of October 12, 1986 to his mother and said, "Mammy, I can not bear any longer. I'll be out of my house. Please come out." He was trembling with fear, when his family took him into home. As his family informed the police via phone that they will let him surrender himself, 3 detectives of the ChungKyung took him and his parents to the police. (The policemen were not stayed around his home timely at the day.)

His parents came back home without accompanying him. His parents tried in vain to send underwears to him. The police investigated him for 3 days without permitting him to sleep all the time. At the investigation the police inquired him: 1) where Paek, won-dam stays, 2) where the another wanted persons stay, and 3) the address where Moon had stayed in Buchon or a city near Seoul.

□ 3 days later ChungKyung called up Moon's family to say "Come on here, for he looks unusual." When Moon Kook-jin looked at the fried chicken his parents brought for him, he jargonized, crying "Did you bought this fried chicken for to let me tortured like it?" Now his parents can not remember in details with weight of ages what he said at that time.

In the police cell of the ChungKyung Moon used to drink his own urine, and behaved as he were watching the policemen and the combat policemen. According to his confession thereafter, at that time he became Mao Tsetung or Lenin, and thought "This guy is a good lot, that guy is a bad lot, I will assign that other fellow to so-and-so position" — a symptom of schizophrenia! Looking at this scene, the policemen would kick him saying "This damn guy pretends madness."